



## IV. 러시아

1. 진입장벽 특징 • 221
2. 수입규제 관련규정 • 222
3. 주요 진입장벽 • 223
4. 진입장벽 피해사례 • 264
5. 진입장벽별 파급효과 • 265
6. 향후전망 • 266



# IV

## 1. 진입장벽 특징

- 규제 및 법률의 수시변경
  - 러시아는 통관, 검역, 수입규제 등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각종 령이 수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수출입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행정명령은 상위법 또는 다른 명령과 모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명령이 너무 많아 세관원들이 모든 명령을 숙지하기 어려움
- 복잡한 인증절차
  - 러시아는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품목별로 다양한 기술표준인증 취득이 필요하여 수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러시아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류도 러시아가 규정하는 기술표준에 부합한다는 위생증명서, 안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함
  - 러시아어 서류제출 의무화로 대행업체 이용이 불가피
- 세관의 불투명한 행정
  - 국토가 넓고 세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 새로운 법령 실시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상 서류접수 3일내 통관을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각종 구실로 통관을 1~2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등 자의적 법적용 여전
  - 따라서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는 매 통관시마다, 담당 세관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통관지연 문제가 자주 발생함
- 금융 및 외환규제
  - 대외거래는 특정 수입은행을 지정, 동 은행을 통해서만 허용함에 따라, 수입은행과의 거래관계 자료가 과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들은 L/C거래를 기피하고, 은행은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 송금을 자의적으로 지체



할 수 있어 대금결제와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함  
 -외환관리법상 수출입대금의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수입 대금  
 결제 시 수입자는 수입대금 선불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은행에 예치  
 해야 함

## 2 수입규제 관련규정

■ 러시아에는 식품안전 및 안전 및 수입과 관련된 법과 수많은 명령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나, 주요 법은 아래와 같음

### ○ 식품관련 법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 식품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
- 국민위생 및 보건에 관한 법
- 유전자공학활동 규제에 관한 법
- 에틸알코올, 주류 및 알코올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 및 취급 규제에 관한 법
- 기술규제에 관한 법
- 수의과학법

### ○ 식품관련 규정

- 식품안전 및 영양을 위한 위생요건 (SanPiN 2.3.2.1078-01)
- 소비자 식품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요건 (GOST P 51074-2003)
- 식품첨가물을 위한 위생요건 (SanPiN 2.3.2.1293-03)

### ○ 러시아 통관 및 검역 관련 법

- 관세법
- 식물검역법

### ■ 수입제도 도입목적

- 관세제도 :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보호 및 국가재정수입 확충
- 수입허가제도 : 국가안보

- 수입쿼터제도 : 국내산업보호
- 강제인증제도 : 국내 소비자 보호
- 러시아어 라벨링 표기제도 : 소비자 필수정보 제공
- 수입규제 : 국내산업보호

### 3 주요 진입장벽

#### 가. 수입허가

##### ■ 수입허가 대상 품목

품목	관련부처
오존파괴물질 및 동물질 포함물질	경제개발부
위험한 부산물	경제개발부, 천연자원부
의약품 및 의약품 재료	경제개발부
수의용 의약품 및 재료	경제개발부, 농업부
의약품 생산을 위한 야채 및 동물성 원재료	경제개발부
화약 및 폭발물	대통령, 행정부
무기, 군사장비, 군사장비 생산장비, 군사 협력분야 작업 및 기술제공	대통령, 행정부
살충제	경제개발부
항정신성 의약품, 독성물질	경제개발부, 보건사회개발부
귀금속 및 호박 등 보석	경제개발부, 재무부
음용 가능한 에틸알코올, 알코올함량 28% 이상의 주류	경제개발부
암호화기기 및 관련문서, 도청 및 감청기기	경제개발부
육류 및 가금류 냉동된 우육과 돈육	경제개발부
핵물질, 핵관련장비, 기술, 동위원소, 방사능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방사능 물질	대통령, 행정부
백열등	경제개발부, 산업에너지부, 반독점 관리청
이중적 사용이 가능한 물품과 기술	대통령, 행정부
야생동물 수집물, 야생동물 및 그 부분	자연 관리청

※ 관련규정 : 대외무역거래관리에 관한 기본법 164-FZ(2003.112.8)



- 알코올 제품은 그 수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저장 및 수입 허가를 보유하였을 때에만 세관통과가 가능
  - 러시아 내에서의 에틸알코올, 알코올 제품, 알코올 함유제품에 대한 생산 및 관리는 기본적으로 연방법 171에 의해 적용 받음
  - 연방법 171은 러시아 수입제품 표시규정, 수입관련 필요 서류, 알코올의 the Unified State Automated System (EGAIS) 등록제도, 제품정보 및 품질기준 등을 규정
  - 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러시아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규정된 수입 알코올 제품 표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입자는 EGAIS에 알코올 제품 수입등록을 하고 제품정보를 인쇄하고 확인 마크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제품포장에 부착해야 함
- 육류제품은 수입자가 수입쿼터를 할당받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의약품 또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가능

## 나. 수입할당

### ■ 수입쿼터제도

- 쿼터제도는 1995년 10월 13일 “대외교역에 있어 국가의 규제” 법률에 규제되어 있는 러시아의 자국 생산자 및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러시아의 WTO 가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임
- 쿼터의 배분은 입찰, 경매 등을 통해 배정되는데 주로 전년도 수입량과 비교해 배정되지만,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유행병이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수입량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상황을 감안하여 배정되기도 함
  - 수입식품 쿼터는 보통 국내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데 2008년 현재 적용되는 품목은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육류

### ■ 수입식품쿼터

- 러시아는 2004년부터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류에 대한 수입쿼터물량을 러시아연방 경제발전통상부에서 발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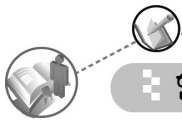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 2005년 12월 5일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쿼터물량을 발표하였고, 매년 참가 신청업체별로 쿼터물량 할당
- EU, 미국, 파라과이 및 수입금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는 기타국가 쿼터 물량에 한해서 능력이 되는 만큼 수출이 가능. 따라서 한국에 대한 쿼터물량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쿼터물량 할당 참가업체의 능력 및 여건에 따라 수출 가능물량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
- 쿼터물량 할당은 러시아 대외경제활동 참가업체의 신청을 기초로 결정
- 러시아 경제발전통상부에서 발표한 2006~2009년도 수입쿼터물량은 다음과 같음

### ■ 2006-2009년 러시아 육류 수입 할당량

(단위 : 천 톤)

품 목		국 가	2006	2007	2008	2009
1	쇠고기(신선, 냉장) *HS Code 0201	EU	27.3	27.8	28.4	29.0
		기타	0.5	0.5	0.5	0.5
		전체	27.8	28.3	28.9	29.5
2	쇠고기(냉동) *HS Code 0202	EU	343.7	347.6	351.6	355.5
		미국	17.9	18.1	18.3	18.5
		파라과이	3.0	3.0	3.0	3.0
		기타	70.4	71.3	72.1	73.0
		전체	435	440	445	450
3	돼지고기 (신선, 냉장, 냉동) *HS Code 0203	EU	240.5	244.9	249.3	253.4
		미국	54.8	49.0	49.8	50.7
		파라과이	1.0	1.0	1.0	1.0
		기타	179.8	189.9	193.4	197.1
		전체	476.1	484.8	493.5	502.2
4	가금류 (신선, 냉장, 냉동) *HS Code 0207	EU	220.6	228.6	236.4	244.4
		미국	841.3	871.4	901.4	931.5
		파라과이	5.0	5.0	5.0	5.0
		기타	63.9	66.2	68.8	71.1
		전체	1,130.8	1,171.2	1,211.6	1,252

(자료원 : 러시아연방 경제발전 통상부)



■ 수입쿼터 품목 관세율 적용

품 목	2006	2007	2008	2009
1 쇠고기 (신선,냉장) *HS Code 0201	15%, 단 1kg당 0.2유로 이상	15%, 단 1kg당 0.2유로 이상	15%, 단 1kg당 0.2유로 이상	15%, 단 1kg당 0.2유로 이상
	55%, 단 1kg당 0.7유로 이상	50%, 단 1kg당 0.65유로 이상	45%, 단 1kg당 0.6유로 이상	40%, 단 1kg당 0.53유로 이상
2 쇠고기(냉동) *HS Code 0202	15%, 단 1kg당 0.15유로 이상	15%, 단 1kg당 0.15유로 이상	15%, 단 1kg당 0.15유로 이상	15%, 단 1kg당 0.15유로 이상
	55%, 단 1kg당 0.55유로 이상	52.5%, 단 1kg당 0.53유로 이상	50%, 단 1kg당 0.5유로 이상	40%, 단 1kg당 0.4유로 이상
3 돼지고기 (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3	15%, 단 1kg당 0.25유로 이상	15%, 단 1kg당 0.25유로 이상	15%, 단 1kg당 0.25유로 이상	15%, 단 1kg당 0.25유로 이상
	60%, 단 1kg당 1.0유로 이상	55%, 단 1kg당 0.9유로 이상	50%, 단 1kg당 0.83유로 이상	40%, 단 1kg당 0.55유로 이상
4 가금류 (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7	25%, 단 1kg당 0.2유로 이상	25%, 단 1kg당 0.2유로 이상	25%, 단 1kg당 0.2유로 이상	25%, 단 1kg당 0.2유로 이상
	60%, 단 1kg당 0.48유로 이상	50%, 단 1kg당 0.4유로 이상	50%, 단 1kg당 0.4유로 이상	40%, 단 1kg당 0.32유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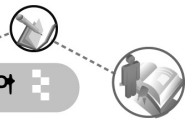
(자료원 : 러시아연방 경제발전 통상부)

\* 각 항목의 첫 번째 줄은 수입쿼터량 이내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며, 두 번째 줄은 수입쿼터량을 초과했을 때 적용

다. 수입금지

- 수입금지 조치는 주로 생산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취해지며, 보통 이러한 경우 러시아 농업부 검역국에서 발생국에서 질병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후 수입금지조치를 철회





- 2007. 2. 5 조류독감으로 인해 영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 2007. 3. 14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으로 브라질산 축산물 수입금지
- 2007. 4. 10 구제역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산 축산물 수입금지
- 2007. 6. 8 돼지콜레라로 인해 그루지야산 축산물 수입금지
- 2007. 8. 29 돼지콜레라로 인해 아르메니아산 축산물 수입금지
- 2007. 9. 10 조류독감으로 인해 베트남산 가금류 수입금지
- 2007. 12. 6 조류독감으로 인해 폴란드산 가금류 수입금지
- 러시아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나 시설이 발견될 경우 업체별로 수입 금지 조치 시행
  - 2008. 2. 20 브라질, 벨기에 육류제품업체 3곳 살모넬라균 검출로 수입금지
  - 2008. 4. 30 미국 돼지고기 공급업체 항생물질 검출로 수입금지
  - 2008. 6. 5 독일 육류제품업체 4곳 러시아 위생기준 위반으로 수입금지
  - 2008. 6. 16 유럽 육류 및 유제품 공급업체 6곳 러시아 수의·위생기준 위반으로 수입금지
  - 2008. 8. 29 미국 가금류 공급업체 안전기준 위반으로 19곳 수입금지

#### ■ 한국산 식품수입 금지현황(2008.02.19 현재)

금지사유	금지품목	공고일자
구제역	산 동물	2002.05.07
조류독감	산 가금류, 인공부화란, 육류 및 모든 가금류 제품, 가금류 용 사료 및 사료 첨가물, 가금류 처리 및 보관에 사용했던 장비	2004.01.23
수은함량 과다	조사 결과 한국의 “Donglim Seafood Co”에서 들여온 냉동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되어 2007.06.18 부터 해당 업체 제품의 러시아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2007.06.20

(자료원 : 러시아농업감독국)



## 라. 세이프가드

- 쿼터 및 수입면허제도 외에 러시아는 자국 생산자 및 시장보호를 위해 1998년 4월 14일 “대외교역에 있어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법”안을 공포한 바 있음
  - 동 법은 외국업체와의 경쟁으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으로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ve measures)”,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보상조치(compensation measures)” 등 크게 세 가지 개념을 도입
- 특별보호조치는 특정 상품이 러시아로 너무 많이 수입됨으로써 러시아 산업이 위협에 처할 경우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수입쿼터제도 및 특별관세 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사전에 수입증가율, 동일제품의 러시아 판매변화율, 러시아 생산 동향 및 시장점유율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게 됨. 특별보호조치는 최대 8년간 발동 가능
  - 특별 수입관세는 최대 200일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특별보호조치는 사전조사 수행 후 실시되게 되는데 농산물의 경우 사전조사 없이 당해연도에 한해 정상관세의 1/3이내에서 관세를 올린 특별수입관세 도입을 할 수 있음
- 반덤핑 조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5년 동안 시행하게 되며,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전조사가 끝나기 전에 4~6개월 동안 특별 반덤핑 관세를 정부가 부과할 수 있음
- 보상조치는 외국정부가 특정 산업 또는 제품 생산에 수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사전조사 후 시행됨. 보복보상관세의 경우 제품 개당 보조금 지급 비율을 넘어서는 안됨. 이 조치는 최종 조사 후 최장 5년까지 시행될 수 있음. 긴급상황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조사가 완료되기 전 4~6개월 동안 잠정보상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

## 마. 보조금

- 러시아 정부는 국가복지정책의 하나로 농업개발과 함께 연간농업 생산증가율을 2012년까지 23% 증가시키기 위해 5개년 농업프로그램을 운영

- 러시아는 농업보조금의 연간예산을 현재 600억 루블에서 2012년까지 1,300억 루블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며, 5년간 총 지원되는 보조금은 5,513억 루블(220억 달러)임
- 5개년 농업프로그램은 현재 3%씩 성장하는 축산업은 5%로, 육류시장의 국내산 점유율은 57.7%에서 76.9%로, 유제품시장은 77.8%에서 81.1%로 목표를 잡고 있음

## 바. 통관비용

-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적용되며, 통관수속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로는 통관비, 세관원 동행료, 창고 보관료 등이 있음
- 수입관세
  - 관세 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에 의거하며, 러시아 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에 의거하여 관세율을 산정
  -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
    - 종가세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Invoice 금액(CIF)의 5%, 10%, 15%, 20%의 관세 부과
    - 종량세 : 통상 Euro관세라고 지칭되는 관세 유형으로 상품의 Invoice 수량(중량)에 따라 euro로 지정하여 관세를 부과
    - 혼합세 :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한 것으로서 산출한 관세 중에서 많은 쪽을 선택해서 부과
- 부가가치세 : 세관신고가격의 18%
- 소비세 : 사치품(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 벤진, 승용차 등)의 경우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20%에서 570%까지 소비세 부과



- 세관수속비 : 통관비, 세관원 통행료, 창고 보관료 등이 있음

구 분	소요비용
통관비	최고 10만 루블(US\$4천)
세관원 통행료	2천 루블(50km까지) 4천 루블(200km까지) 초과 100km 당 1천 루블
세관창고 보관료	1루블/100kg.1일 2루블/100kg.1일 (특수시설)

■ 러시아의 관세체제는 5개 분류대상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면제
- 최혜국지위를 가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기초 관세율 적용. 약 130개 국가
- 106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기초관세율의 75% 적용
  - 한국은 현재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 규정 제 1539호(2003.12.25)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FORM A)를 제출하면 수입관세의 25%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48개 최빈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면제
- 위 우대국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초관세율의 2배가 적용됨

■ 러시아의 대상국별 관세체계

구 분	관세율	비 고
CIS 국가	면세	-
최혜국대우(MFN) 대상국가	기본관세율	130개국(EU 회원국 포함)
개발도상국	기본관세율의 75% (GSP)	106개국(한국 포함)
최빈 개발도상국	면세(GSP)	48개국
최혜국대우(MFN) 비대상국가	기본관세율의 200%	-

## 사. 품질규제

### ■ 위생검역제도

- 위생검역증(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은 제품, 활동 종류 또는 기술적 조건이 적용 가능한 위생 기준과 러시아 소비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위생 기준과 및 공중위생규정에 부합한다고 확인시켜주는 문서로 수출 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위생검역증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복지 감독국(The Federal Service for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Human Well-Being ; Rospotrebnadzor)에 의해 발급되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Hygienic Requirements For Foodstuff Safety and Nutrition (SanPiN 2.3.2. 1078-01)
  - General Requirements For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Regarding Foodsstuffs (GOST P 51074-2003)
  - Hygienic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SanPiN 2.3.2.1293-03)
- 검사절차
  - 제품검사 신청서 등록 및 서류제출
  - 검사에 필요한 샘플 수량 결정
  - 검사 관련 비용 계약체결
  - 제품 관련 서류검사
  - 제품테스트
  - 검사결과 후 결정
  - 제품 검사증명서 발급
- 제출서류
  - 검사신청서
  - 수출입계약서
  - 안전증명서(수출국 발급)
  - 제품설명서
  - 라벨(러시아어)
  - 기타 검사기관 요청자료



- 수입 통관시 GOST-R 품질인증이 제출되어야 하며, 동 인증에 위생 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위생검역증과 GOST-R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러시아내 수입이 가능하고, 각 품목당 인증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위생검역증과 품질인증서를 수출자가 한국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1품목당 80만원 정도 소요됨

#### ■ 품질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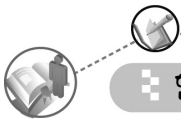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이 요구되는 모든 제품은 러시아의 GOST-R 인증을 획득해야 함
  - 러시아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1993년부터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1997년 7월부터는 제품 또는 포장에 GOST-R 인증 마크부착을 의무화하는 강제 시행제도가 도입되어, 이후 동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수입 및 판매 금지
- GOST-R 인증은 러시아 정부 공식규격 인증시스템으로, 러시아에 수출되는 상품은 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러시아 국가표준규격위원회에서 담당
  - 인증취득을 위해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테스트센터에서 제품 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결정
- GOST-R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성격에 따라 1년에서 3년으로, 매 통관시마다 제출토록 되어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GOST-R 인증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 필요
  - 인증신청서
  - 제품 샘플
  - 품질증명서 (작성 : 생산자)
  - 위생검역증
  - 라벨(러시아어)
  - 기타 검사기관 요청자료
- 건강보조식품(인삼, 특성성분-건강 치료 및 보조식품 등)은 러시아 보사부의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아. 상품표시규제

### ■ 라벨링 요구조건

-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식품류는 반드시 러시아어로 제품정보가 표시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제품명
  - 제품성격, 등급, 분류
  -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출자, 수입자 이름, 국가, 주소
  - 중량 또는 부피
  - 영양정보
  - 원료
  - 제조일, 유통기한
  - 보관방법
  - GOST-R 품질인증마크
- 2005년 7월 1일 식품에 관한 소비자 정보를 위한 일반요건을 규정하는 GOST 51074-2003 발효
  - GOST 51074-2003는 도소매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전 식품, 외식업체 및 학교에 공급되는 제품, 기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식품에 대하여 규제(러시아어로 생산자 정보, 원산지, 상표, 중량, 성분, 영양정보, 보관방법, 유통기한, 관련규정, 제품표준 등을 표시해야 함)
  - 또한 식품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의 라벨표시조건을 규제
- 육류제품의 라벨링 특이사항
  - 육류 및 육류 가공품 (Order # 13-8-01/2-1 of December 23, 1999) 도체 (부분품 포함)의 경우 생산업체 표시와 함께 수출국 검사기관의 검사필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포장육, 우유 및 유제품, 계란 등의 경우에는 포장에 이러한 인이 찍혀 있어야 함
  - GOST 51074-2003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담고 있음
    - 냉장(냉동)된 가금류, 내장, 완제품 등의 모든 육류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함
    - 진공포장 또는 가스충전포장의 경우에는 포장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함



- 통조림 제품의 경우, 육류성분, 지방, 내장 및 기타 부위 및 식물성 원료의 함유비율을 표기해야 함
- 완제품 통조림의 경우 최종 조리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재

### ■ 포장기준

- 현행 식품포장과 관련하여 169개의 GOST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통과정에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규정임.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 대해서는 HN 2.3.3.972-00에서 위생기준을 규정. HN 2.3.3.972-00는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의 최대허용 화학물질 함유량을 표시
- 포장재와 운반상자는 위생검역을 받아야 하고, 품질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허용 사이즈, 형태, 운반상자의 재질은 GOST ISO 3394-99에서 규정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제품의 특성에 따른 포장조건을 충족해야 함
  - 포장된 곡물의 경우, 농업부 명령 681에 따라 공기가 투과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
  - 냉장육류의 경우,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기 투과성이 낮은 재질, 색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가스 투과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

## 자. 원산지규정

-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1993년 5월 21일 승인된 연방법령 5003-1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기술되어 있음
-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증명하는 서류로 같음되며,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확인 또는 발급한 서류가 주로 사용됨
-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신고서, 기타 서류 등과 함께 통관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함. 비록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필수서류에 준함

## 차. 동식물 검역규제

### ■ 수의검역제도

- 러시아로 수입되는 육류제품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국(the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 Rosselkhnadzor, VPSS)의  
검사와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육류 처리, 가공, 저장시설은 동식물검역국의  
검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은 공식목록에 기재되어야 함. 검사비용은  
해당시설 부담

○ 쿼터 물량을 획득한 수입자는 동식물검역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입자가 관련 지방 수의검역기관에 육류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중앙 수의검역기관에 신청서를 보냄. 중앙 수의검역기관은 국경당국에 수입을  
허가하는 통지서를 보내며, 본 문서에는 수입원산지 및 물량 등 상세정보가 기  
재되어 있음

-수입쿼터 물량을 매년 배정함에 따라 수입자는 매년 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 화물이 국경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국경 동식물검역소에서 국내 수의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함

-수의검역 시 수출입계약서, 선적서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세관신고서, 수의  
검역증, 위생검역증, 안전증명서, 품질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수입요건

**육류 : Letter No. 13-8-01/2-1 of December 23, 1999**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아래 질병이 창궐하지 않는 지역제품만 수입 가능함

a. 전체

- African swine cholera (최근 3년간 해당국)
- 구제역(최근 12개월간 해당국)

b. 소

- Spongiform encephalopathy (해당국)
- Pestis bovina, Pleuropneumonia contagiosa, Stomatitis vesicularis (최근 12  
개월간 해당 지역)
- Tuberculosis, brucellosis, leucosis (최근 6개월간 해당 지방)
- Sverdlovsk anthrax leak, emphysematous carbuncle (최근 20일간 해당 지방)



c. 염소, 양

- Spongiform encephalopathy (해당국)
- Blue tongue, cholera and contagious pleuropneumonia (최근 12개월간 해당국)
- Adematosis, arthritis, enthephalitis (최근 3년간 해당지역)
- Ovinia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 Tuberculosis, brucellosis (최근 6개월간 해당 지방)
- Sverdlovsk anthrax leak (최근 20일간 해당 지방)

d. 돼지

- Swine vesicular disease (최근 12개월간 해당 국가)
- Swine classical cholera, enterovirus encephalomyelitis(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 Trichinellosis (최근 3년간 해당 지역)
- Reproductive respiratory syndrome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 Sverdlovsk anthrax leak, Diamond-skin disease (최근 20일간 해당 지역)

-유전자 조작 사료(genetically modified products)를 먹인 고기도 수입이 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러시아로 수입할 수 없음

- 도살 후 검사에서 구제역, 콜레라, 결핵, leucosis 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 보존 기간 중 해동되었을 경우
- 부패, 변질 징후가 보일 경우
- 냉동육의 경우 뼈 근처의 근육이 -8도 이상, 기타 부분이 4도 이상에서 보존되었을 경우
- 내장에서 금지 잔존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가공처리된 경우
- 살모넬라균 등 전염가능한 미생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등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됨

가급류 : Letter No 13-8-01/2-2 of December 23, 1999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 가능함

- a. African swine cholera (해당국 최근 3년);
- b. Mouth disease (해당지역 최근 12개월);
- c. 뉴캐슬병, bird fever, 콜레라(해당 지역 최근 6개월);
- d. Ornithosis, Paranix Virus Infection, turkey rhinotracheitis, infectious laringotracheitis, infectious encephalomyelitis (사육지역 최근 6개월, 닭, 칠면조 해당)
- e. Dergy disease, Virus hepatitis of small ducks, Ornithosis (오리, 거위 해당, 사육 지역 최근 6개월);

-유전자 조작 사료(genetically modified products)를 먹인 고기도 수입이 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러시아로 수입할 수 없음

- 도살 후 검사에서 기생충 및 기타 유독 병원균이 발견되었을 경우
- 내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 나쁜 감각적 특징(bad organoleptic features)이 있을 경우
- 냉동육의 경우 근육 온도가 -18도가 넘을 경우
- salmonella균 등 전염가능한 미생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가공처리된 경우
- 부패, 변질 징후가 보일 경우 등

-포장은 1회용이어야 하며,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됨

**캔, 소시지 등 완전가공된 육류제품 : Order No 13-8-01/2-4 of December 23, 1999**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또한,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가축이어야 하며

-육류와 마찬가지로 extra-gen/hormone agents, thireostatic agents, antibiotics, pesticides, African swine cholera (for 3 years), great cattle cholera (12months, mouth disease (for 6 months) 등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함

-이외에 포장은 위생 규정에 맞게 1회용이며 밀봉되어야 함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됨

우유 및 유제품 : Order No. 13-8-01/2-6 of December 23, 1999

-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함

- African swine cholera (최근 3년간 해당국);
- Mouth disease, contagious pleuropneumonia and vesicular stomatitis of great cattle (최근 12개월 해당국)
- Brucellosis of great cattle, leucosis, tuberculosis, para-tuberculosis (최근 12개월 생산지역)
- Brucellosis of goat and sheep (최근 2년간 생산지역)
- Pox of goat and sheep (최근 6개월간 생산지역);

-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살모넬라균 및 기타 독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함

- 유제품 제조를 위한 우유는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유제품은 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 재처리되어야 함

- 제품은 나쁜 감각적 특징(bad organoleptic features)이 있을 경우, 포장 안전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될 수 있음. 포장은 1회용이어야 함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됨

생선, 해산물 및 가공품 : Order No. 13-8-01/2-8 of December 23, 1999

- 신선/냉장/냉동 생선, 해산물 및 관련 가공제품은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러시아에 수입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실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제품은 African swine cholera(최근 3년간), 구제역(최근 12개월)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바다 및 민물생선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기생충이 허용범위내에 있을 경우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 되는 방법을 통해 제거될 수 있음
- 또한, 사료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허됨
    - 온도가 -18도 이상일 경우;
    -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에 감염되었을 경우
    - 병원균 감염에 의해 변화가 있을 경우
    - 나쁜 감각적 특징(bad organoleptic features)이 있을 경우
    - 보존 기간 중 해동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등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 자연적/인위적 extra-gen and hormone agents, thireostatic agents, antibiotics, pesticides 등의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포장은 위생규정에 부합하도록 1회용 제품이어야 함
  - 제품 선적은 온도규정에 상응하지 않게 처리된 경우 러시아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이후 가능함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됨

#### 계란 및 관련제품 : Order No 13-8-01/2-10 of December 23, 1999

-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육된 건강한 지역에서 사육된 조류로부터 나온 제품이며,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통제를 받고 수출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음
- 한편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수입될 수 있음
  - African swine cholera (최근 3년간)
  - Mouth disease (최근 12개월간)
  - Ornithosis, Paranix Virus Infection, infectious bronchitis of chickens,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infectious encephalomyelitis, Newcastle disease, bird fever (최근 12개월간)
- 또한 유전자 변형 사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조류로부터 생산된 달걀이어야 함
- 나쁜 감각적 특징이 있을 경우 또는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살모넬라균 등 유해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경우, 화학 처리되거나 자외선 처리되었을 경우 등은 수입이 불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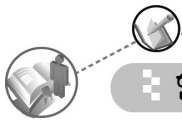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 계란 가공제품은 안전보장을 위해 재처리되어야 하며 포장은 1회용이어야 함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하여야 함.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됨

■ 식물검역제도

-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물제품은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러시아 동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증을 받아야 함
- 식물검역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the Federal Legislation on Plant Quarantine (2000.7.15)
  - the Ministry of Agriculture's Order N 681 (2002.9.3) " On plant quarantine while importing, storing, transporting, and using grain and grain products that are imported into Russia for food, feed, and processing"
  - the Ministry of Agriculture's Order N 163 (2007.3.14), " On Organizing Activities To Issue Phytosanitary And Quarantine Certificates"
- 러시아연방 농업부는 식물검역 대상 목록([http://www.mcx.ru/images/download.html?pi\\_id=4481](http://www.mcx.ru/images/download.html?pi_id=4481)) 및 주요 식물검역 물질에 해당하는 해충, 병, 잡초 등의 목록([http://www.mcx.ru/index.html?he\\_id=484&doc\\_id=3252](http://www.mcx.ru/index.html?he_id=484&doc_id=3252))을 기관 사이트에 게시
- 검역절차
  - 수입자는 화물이 수출국을 출발하기 전에 수입식물검역허가서(Import Quarantine Permit for imports of products subject to quarantine inspection)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품의 러시아 국경 도착과 함께 러시아 식물검역소는 대상물품 및 운송기기 검역
  - 검역 시 검역물질이 발견될 경우, 당국은 화물을 수출자에게 반송하거나 소독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소독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음
  - 검역을 통과하면 검역인증서(Quarantine Certificate)와 러시아 식물검역증명서(Act of the Russian government quarantine phytosanitary control)를 발급
  - 식물검역소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다른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됨
- 수입품을 극동지역의 국경을 거쳐 모스크바로 운송하는 경우, 국경지역 식물검역소에서 1차 검역, 도착지 식물검역소에서 2차 검역 시행

## ■ 식물검역대상 리스트

품 목	H.S. 번호
Fish flour, granules for food	0305100000
Bulbuses, root tubers, tubers, except H.S. Code 1212	0601
Other alive plants	0602
Cut flowers, flower buds	0603
Leaves, branches, plant parts	0604
Potato, fresh or frozen	0701
Tomato, fresh or frozen	0702 00
Onion and onion-related vegetables, garlic, fresh or frozen	0703
Cabbage of various kinds of the Brassica type, fresh or frozen	0704
Lactuca saliva, Cichorium spp, fresh or frozen	0705
Carrot, turnip, beet, radish etc, fresh or frozen	0706
Cucumber, cornichon, fresh or frozen	070700
Bean vegetables, fresh or frozen	0708
Other vegetables, fresh or frozen	0709
Dried vegetables, whole, cut, in powder, fresh or frozen	0712
Dried Bean vegetables, hulled, coated or not coated, crushed or not crushed etc	0713
Manioc, arrowroot etc	From 0714
Coconuts, Brazil nuts etc	0801
Other nuts, fresh or dried	0802
Bananas etc	0803 00
Dates, figs etc	0804
Citrus fruit etc	0805
Grapes, fresh or dried	0806
Melons etc	0807
Apples. Pears etc	0808
Apricots, cherries etc	0809
Other fruits, fresh	0810
Dried fruits, etc	0813
Coffee	From 0901
Tea, whether or not flavored	0902



품 목	H.S. 번호
Mate	0903 00 0000
Spices	0904-0910
Weat and meslin	1001
Rye	1002 00 0000
Barley	1003 00
Oats	1004 00 0000
Maize (corn)	1005
Rice	1006
Grain sorghum	1007 00
Buckweat	1008
Wheat flour	1101 00 1100, 1101 00 1500
Weat-Rye flour	1101 00 9000
Cereal flours etc	1102
Cereal groats etc	1103
Cereal grains etc	1104
Flour, meal, powder etc	From 1105
Flour, meal, powder etc	1106 10 0000
Malt	1107
Soya beans	1201 00
Peanuts, not fried, coated or not coated, crushed or not crushed	1202
Copra	1203000000
Lint seeds, crushed or not crushed	1204 00
Rape seeds, crushed or not crushed	1205
Sunflower seeds, crushed or not crushed	1206 00
Flours and meals of oil seeds, except those of mustard	1208
Seeds, fruits and spores, used for sowing	1209
Hop cones, fresh or dried, crushed or not crushed	From 1210
Plants and their parts, used in perfumery, pharmacy or for insecticidal etc purposes	1211
Locust beans, seaweeds, sugar beet etc	1212
Cereal straw and husks etc	From 1213 00 0000





품 목	H.S. 번호
Swedes, mangolds, fodder roots etc	From 1214
Natural shellac, not purified	1301
Vegetable material for plaiting etc	1401
Vegetable materials for stuffing etc	1402 00 0000
Vegetable materials for brooms etc	1403 00 0000
Vegetable materials, not specified etc	1404
Raw sugar, cane or beet	1701 11, 1701 12
Cocoa beans, whole or crushed etc	1801 00 0000
Tapioca and substitutes etc	1908 00 0000
Bran etc	2302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etc	2304 00 000, 2305 00 000, 2306

#### ■ 잔류농약허용기준

- 러시아 정부는 내국 제품 및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및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마련하였음. 이 기준치는 제품그룹별 허용 기준치를 담아 공식문서 (SanPiN 2.3.2.1078-01)로 발간. 또한 SanPiN 2.3.2.1078-01은 비가공제품(예 : 곡물 또는 채소류)의 농약잔류량 기준도 규정하고 있음
- 농약 및 살충제에 대한 등록 절차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은 러시아 농업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매년 Catalogue of Pesticides and Agricultural Chemical Substances Allowed for Use in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이름으로 공표 (Ministry of Agriculture website : [http://www.mcx.ru/index.html?he\\_id=961&doc\\_id=7610](http://www.mcx.ru/index.html?he_id=961&doc_id=7610)).
- 이 목록은 화학물질 리스트, 사용규정, 등록 관련절차, 각 해충에 대한 화학약품 리스트를 담고 있음
- 여기에 실려 있지 않은 화학약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약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됨



■ 잔류농약허용기준

〈육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우유 및 유제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관련 품목
hexachlorocyclohexane	0.05	Milk, milk-based drinks
	1.25	Cream, sour cream
DDT and its metabolites	0.05	Milk, milk-based drinks
	1.0	Cream, sour cream

■ 생선, 해산물 및 관련 제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2	Sea water, sea animal meat
	0.03	Fresh water
DDT and its metabolites	0.2	Sea water
	0.3	Fresh water
	2.0	Sturgeon, salmon, fat herring
	0.2	Marine animal meat
2,4 D acid, its salts and esters	forbidden	Fresh water

■ 씨리얼(wheat, rye, rice, corn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5	
DDT and its metabolites	0.02	
hexabenzol	0.01	wheat
Hydrargyrum Organic Pesticides	Forbidden	
2,4 D acid, its salts and esters	forbidden	

〈설탕〉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05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신선/냉장 채소, 감자, 과일, 버섯 등〉

Nitrates	Not more than mg/kg	Item
hexachlorocyclohexane	0.1	Potato, green peas, sweet beet
	0.5	Vegetables, cucurbits crop, musrooms
	0.05	Fruits, berries, grapes
DDT and its metabolites	0.1	

〈해바라기 씨, 콩, 옥수수 및 견과류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Items
Hexachlorocyclohexane	0.2	Soya, cotton plant
	0.4	Line, mustard, rape
	0.5	Sunflower, peanut
DDT and its metabolites	0.05	Soya, cotton plant
	0.1	Line, mustard, rape
	0.15	Sunflower, peanut

〈식물성 기름 (모든 종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Items
Hexachlorocyclohexane	0.2	
	0.05	Refined
DDT and its metabolites	0.2	
	0.1	refined

\* 인조 버터, 식품 제조용 지방, 과자류 지방, 마요네즈 등은 식물성 기름 기준과 동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지방〉(냉동/냉장); 〈salt pork〉(냉동/냉장)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2
DDT and its metabolites	1.0

〈쇠고기의 버터〉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1.25
DDT and its metabolites	1.0

〈동/식물 지방으로 만든 지방제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1.25
DDT and its metabolites	1.0

〈생선 지방〉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2

〈식물성 단백질 추출물 등〉

(Isolates, Concentrates, Hydrolizates, Texturates Of Vegetable Protein; Food Meal, Containing Different Percentage Of Fats Of Bean Seeds, Oil-Bearing Crop.)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5	From cereals, corn, beans (except soya), sunflower, peanuts
	0.4	From line, mustard and rape
	0.2	From soya, cotton plant
DDT and its metabolites	0.15	From sunflower, peanuts
	0.1	From line. mustard, rape
	0.05	From beans, cotton-flower, corn
	0.02	From cereals

〈우유 혈청 단백질 등〉

(Milk Serumal Protein Concentrates, Casein, Caseinate, Mill Protein Hydrolizat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1.25
DDT and its metabolites	1.0

〈곡물 씨의 배아 등〉

(Embryos Of Seeds Of Cereals, Beans And Other Crop, Flakes, Food Meals etc.)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5
DDT and its metabolites	0.02

〈곡물 또는 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제품〉

[ Protein Products, Made From Seeds Of Cereals, Beans and Other Crop (Drink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01
Hydrargyrum Pesticides	Forbidden

〈젤라틴 등〉 (Gelatin, Gelling Protein Concentrat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녹말, 당밀 등〉 (Starches, Molasses And Their Related Product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5	From Corn
	0.1	From Potato
DDT and its etabolites	0.05	From Corn
	0.1	From Potato



〈건조 고풍 부용〉 (Dry Bouillon For Food)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영양 섬유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Made From Nutritive Fibers(Cellulose, Acacia, Pectin, Micro-Crystal Cellulose etc) ]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5
DDT and its metabolites	0.02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순수 물질 또는 이의 농축액으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ased On Pure Substances(Vitamins, Mineral Substances, Organic Acids) Or Their Concentrates (Herb Extracts), Made With Various Filling Substances(Including Dry Concentrates For Making Beverages) ]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5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허브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Herb-Based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육류 및 유류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ased On Raw Meat And Milk Processed Product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생선 및 해산물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ased On Fish, Seafood Products, Sea Plant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2
DDT and its metabolites	2.0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Pro-Biotic Microorganisms으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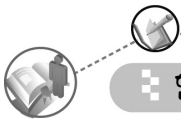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ased On Pro-Biotic Microorganism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5
DDT and its metabolites	0.05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단세포 수산식물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Spirulin, Chlorella)〉

[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ased On Unicellular Water Plants (Spirulin, Chlorella) ]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유아용 유제품 혼합물〉 (Adapted Dairy Mixtures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유아용 커드〉 (Curd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55
DDT and its metabolites	0.33

〈유아용 밀가루와 귀리(요리용)〉 (Flour And Groats For Babies(for cooking))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1
Hexachlorbenzol	0.01
Hydrargyrum Organic Pesticides	Forbidden
2,4-D Acid, its salts and esters	Forbidden

〈유아용 과일 및 채소식품, 통조림제품〉

(Fruits and Vegetables-Based Food,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Nitrates	50	Fruit-based
	200	Vegetables, Vegetables and Fruits-based(including ananas)



〈유아용 육류통조림〉 (Canned Meat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Nitrites	forbidden

〈유아용 육류 및 채소 통조림제품〉

(Meat And Vegetable-Based Canned Products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Nitrates	150	For canned products, containing vegetables
Nitrites	Forbidden	

〈유아용 생선통조림〉 (Canned Fish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Polychlorinated Biphenyls	0.5
Gistamin	100
Nitrozamin	Forbidden

〈유아용 생선/채소 통조림〉

(Fish And Vegetable-Based Canned Products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Polychlorinated Biphenyls	0.2
Gistamin	40
Nitrozamin	Forbidden



〈유아용 인스턴트 허브차〉 (Herb Instant Tea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미취학/취학 어린이용 육류 통조림〉

(Canned Meat For Preschool Children And School Pupil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Nitrites	forbidden

〈미취학/취학 어린이용 소시지 제품〉

(Sausage Products For Preschool Children And School Pupil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Nitrites	30
Nitrozamins	0.002

〈미취학/취학 어린이용 제빵류 및 제분제품〉

(Bread, Bakeries, Flour And Groat Products For Preschool Children And School Pupil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1
Benzpyrene	forbidden

〈어린이용 저당 또는 무당 건강식품〉

(Low Lactose And Lactose-Free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어린이용 건강식품-Soya Protein Isolate〉  
(Soya Protein Isolate-Based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어린이용 고단백 건조 낙농 건강식품〉  
(High Protein Dry Dairy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어린이용 저단백 건강식품〉 (Low Protein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1
Benzpyrene	Forbidden

〈어린이용 건강식품-Full Or Partial Protein Hydrolyzates〉  
(Health Food For Children, Based On Full Or Partial Protein Hydrolyzat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유아용 무(無)페닐알라닌 건강식품〉  
(Phenylalanine-Free Health Food For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어린이용 건강유제품〉

(Milk-Based Sublimed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5
DDT and its metabolites	0.03

〈어린이용 육류 건강식품〉

(Meat-Based Sublimed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어린이용 야채건강식품〉

(Vegetable-Based Sublimed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조산아용 음식〉 (Food For Premature Babi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05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임산부용 건강유제품 및 콩단백 제품〉

(Milk-Based And Soya Protein Isolate-Based Food For Pregnant And Baby-Feeding Wom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임산부용 우유/시리얼 제품〉

(Milk And Cereals-Based Porridge For Pregnant And Baby-Feeding Wom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1
Benzpyrene	forbidden

〈임산부용 과일/야채식품 (주스, 넥타 등)〉

[ Fruits And Vegetable-Based Food For Pregnant And Baby-Feeding Women(Fruit and Vegetable Juice, Nectar etc) ]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Nitrates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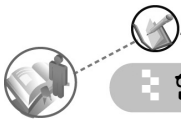
〈임산부용 인스턴트 허브차〉 (Herb Instant Tea For Pregnant And Baby-Feeding Wom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건강식품용/무가공 신선과일 및 야채(어린이용)〉

(Fresh Fruits And Vegetables Used As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For Making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Nitrates	
Beet	600
Cabbage	400
Vegetables, Banana	200
Fruits	50



〈어린이 건강식품용 과일주스〉 (Fruit Juice For Making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Nitrates	100	Fruits

〈어린이 건강식품용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

[ Meat (Beef, Pork etc) For Making Health Food For Children ]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01	For Children, Aged Under 3
	0.005	For Children, Aged Over 3
DDT and its metabolites	0.01	For Children, Aged Under 3
	0.015	For Children, Aged Over 3

〈육류 부제품(간, 심장, 혀)〉 [Meat Sub-Products (Liver, Heart, Tongue)]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5
DDT and its metabolites	0.015

〈어린이 건강식품용 가금류〉 (Poultry For Making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어린이 건강식품용 생선〉 (Fish For Making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어린이 건강식품용 식물성 유지〉

[ Vegetable Oil(Refined, Deodorized) For Making Health Food For Children ]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어린이 건강식품용 버터〉

[ Cow Butter(High Grade) For Making Health Food For Children ]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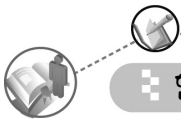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어린이 건강식품용 설탕〉

(Sugar For Making Health Food For Children)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Forbidden
DDT and its metabolites	Forbidden

■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 현재 러시아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6종, 콩 3종, 감자 3종, 쌀 2종, 비트 2종, 미생물 5종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 2007년 9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는 유전자변형물질을 0.9% 이상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포장에 이를 표시해야 함
- SanPiN 2.3.2.1078-01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과 아닌 제품을 구분하고 있음



■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

Food Raw Material	Foodstuff Item
Soya	Soya Beans
	Soya Plantlet
	Soya Protein Concentrate And Its Textured Forms
	Soya Protein Isolate
	Soya Protein Hydrolyzate
	Soya Milk
	Soya Dry Milk
	Canned Soya
	Cooked Soya Beans
	Roasted Soya Beans
	Roasted Soya Flour
	Food, Made From Soya Protein Isolate, Soya Protein Concentrate, Soya Protein Hydrolyzate, Soya Flour, Soya Dry Milk
	Fermented Soya Food
	Soya Paste And Related Food
	Soya Sauce
Food, Made From Soya Milk	
Corn	Corn For Direct Use As Food (Flour, Groats etc)
	Frozen And Canned Corn
	Popcorn
	Corn Chips
	Flour Mixtures, Containing Over 5 % Of Corn Flour
Potato	Potato For Direct Use
	Potato Mash, Dry(Semi-Product, Quickly Frozen)
	Potato Flakes (Semi-Product, Quickly Frozen)
	Potato Chips (Semi-Product, Quickly Frozen)
	Potato Crackers (Semi-Product, Quickly Frozen)
	Roasted Potato Sticks, Slices, Straws
	Potato Flour For Making Pancakes
	Dough Cakes With Potato Inside (Semi-Product)
	Potato Mash, Not For Cooking
	Instant Dried Potato, Quickly Restored
	Instant Dried Potato, Quickly Cooked
	Canned Potato
	Molasses
Tomato	Tomato For Direct Use As Food (Natural, Solid-Pack)
	Tomato Paste
	Tomato Mash
	Tomato Juice, Drinks
	Tomato Sauce, Ketchup



Food Raw Material	Foodstuff Item
Marrow	Natural Marrow
	Marrow-Based Food
Melon	Natural Melon
	Melon-Based Food
Papaya	Natural Papaya
	Papaya-Based Food
Chicory	Chicory-Based Food
Food Additives	Food Additives, Made From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Containing Genetically Modified Components

■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 안 해도 되는 제품

Food Raw Material	Foodstuff Item
Soya	Soya Oil, Refined
	Soya Lecithin
	Fructose
Corn	Corn Oil, Refined
	Corn Starch
	Maltodextrins
	Corn Starch Syrup
	Glucose
	Fructose
	Molasses
Sweet Beet	Sugar
	Glucose
	Fructose
Potato	Potato Starch
	Glucose
	Oligo-Sugar
Rape	Rape Oil And Related Items
Line	Line Oil And Related Items
Cotton Plant	Cotton Plant Oil And Related Items



## 카. 통관절차

- 러시아의 통관 절차는 매우 관료적으로 실제 그 수속을 정식으로 밟을 경우 매우 복잡함. 그러나 만약 수입상이 세관원들과의 관계가 좋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을 경우 심지어 별도의 뇌물 공여 없이도 통관이 쉽게 행해지기도 함
- 실제로 러시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점도 각종 부정이 행해지는 원인이기도 함.(통관 관련 법규 관련, 각종 령이 수 없이 남발되어 있음. 이러한 행정명령은 상위법 또는 다른 명령과 모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명령이 너무 많아 세관원들이 모든 명령을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임)
- 또한 국토가 너무 넓고 세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있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법령 실시도 실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는 매 통관시 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흔함
- 러시아 통관절차에 관한 기본 행정명령은 1996년 4월 4일 발표된 바 있는 관세 위원회 명령 203호라 할 수 있음. 동 명령에 기재된 수입상들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음
  - 수입상들은 세관에 “대외경제활동 참가업체” 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수입상은 화물 도착에 관한 사실을 세관에 통보함
  - 수입상은 수입제품을 세관 창고에 위치시켜야 함
  - 수입상은 세관에 간이 통관신고서와 운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상은 정식 화물 통관신고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동식물검역대상 품목은 통관절차를 밟기 전 화물 도착 시 검사 후 수의검역증 또는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 통관 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검역 시 검역대상에서 반입 금지 물질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발견될 경우 화물은 억류되거나 반송조치 될 수 있음
- 통관서류
  - 통관신고서(소정 양식)
  - 수출입계약서
  - 상업송장(Invoice)
  - 포장리스트(Packing List)



- 운송서류(bill of lading, railway transportation bill, the CMR int'l car transportation bill, air transportation bill 등)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위생검역증(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
  - 외환규제제도에 따른 서류 및 물품가액 증명 서류 등(operation ID, 운송서류, 보험서류)
- ※ 수입 물품에 따라서는 아래 서류도 제출을 하여야만 함
-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수입)면허 원본
  - 관련 기관(농업부)등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류 원본
  - 각종 인증서류 등(안전인증, 식물검역증, 수의검역증 등)
- 수입통관절차
    - 세관원이 통관신고서 내용 확인
    - 신고제품의 HS Code와 실제물건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원산지 증명 및 관세 규정 절차준수여부 확인
    - 외환관리 및 신고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신고액수와 관련서류의 일치여부 확인
    - 관세정보 재검토 및 관세납부
    - 화물 수령
  - 러시아는 통관처리 기한을 최대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성, 투명성을 확보에 주력
    - 관세 및 부가세 부과를 위한 물품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될 경우, 예탁금 납입 조건하에 물품의 우선 반출이 가능
    - 상품검사의 경우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에 통관된 실적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샘플 검사로 대체 가능
    - 단, 신제품 및 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실시
  - 통관시 주의사항
    - 인보이스상 명기된 물품 내역은 거래계약서에 명기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통관시 H.S. Code를 정확히 명기할 것
    - 관세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품가액 평가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충분히 확보 후 제시할 것 (수출 신고 사본, 가격표 등)
    -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보세창고 및 담당세관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것



## 타. 환경정책

- 일반적으로 “환경정책”은 러시아에 잘 알려져 있고 관련 법규도 매우 잘 정비되어 있으나 식품의 생태학적 순수성과 관련해서는 2개의 법률이 있음
- 곡물에 관한 법률(Law on cereals)에는 어린이용 곡물의 생태학적 순수에 관해 언급되어 있으며, 농업법에는 생태학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생태학적 순수성에 대해 통관시 의무사항은 없으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이 무공해 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러시아 시장 판매에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러시아 소비자들은 러시아산 식품이 전통농법으로 경작되고 각종 인위적인 첨가물이 적기 때문에 수입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함
- 생태인증은 비정부, 비영리기관이며 Gosstandard로부터 인증 발급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함. 현재 생태인증은 소비자보호재단에서 발급하고 있음
- 생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 신청서
  - 각종 인증서(veterinary, phytosanitary, safety) 사본
  - 권위있는 실험실에서 발급한 실험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제품 가공을 설명하는 서류 사본(필요시)
  - 인증 발급시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만약 실험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실험을 위한 샘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파. 기타 진입장벽

- 별도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음. 러시아로 수입될 수 있는 적절한 품질을 갖춘 식품의 경우 다양한 검사 및 인증을 정해진 기관에서 받으면 수입이 가능함
- 각종 수입규제제도 및 정책 외에 높은 시장진입비용 또한 장벽으로 작용



-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지역은 제품의 매장 입점비가 매우 높고, 초기 마케팅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퇴출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스템임
- 극동지역을 제외한 러시아지역은 높은 운송비로 인하여 제품가격이 상승
  - 러시아는 주로 가까운 유럽 및 CIS국가, 중국 등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을 해야하는 신선농산 품목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최근 수년간 철도운임이 급격히 인상되어 운임이 해상운송의 2배 수준까지 도달함
- 한국에서 극동 지방을 통해서 운송되는 화물은 연초에는 흑한으로 인하여 터미널에서 수하 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안전 상의 이유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기도 함에 따라 화물 운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2-3배 운송 기간이 걸리는 경우 발생
-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에 제품에 대한 표기를 잘못하거나, 관세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품목을 바꾸는 회색 통관 제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집중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 하. 상관습

- 독특한 대금결제 관행
  - 최근 대형 수입업체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영세업체로서 소량 주문 및 단기 딜리버리 선호 (현금 유동성 중요)
  - 일부 현금선불과 외상거래가 결합된 형태
  - 금융제도의 미비 및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은행이용 기피 (L/C 거래 기피 경향)
  - 2001년부터 소득세를 13%로 하향 단일세율화 하는 등 조세부담율을 낮춰 탈세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금융제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탈세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인맥이 중요한 상거래 관행
  - 서구적 합리주의보다는 인정과 친분관계에 의한 직접 대면 비즈니스 선호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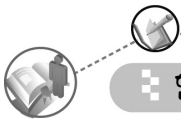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언어소통 능력과 러시아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비즈니스 추진에 중요한 역할
- 유통산업의 미발달
  - IKEA, METRO, Auchan 등 외국계 유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나, 아직까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며, 이나마 모스크바에만 집중되고 있음
  - 제조업체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미흡. 수입상이 직접 소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음
- 지하경제 (Shadow Economy) 비대
  - 지하경제가 GDP의 30~4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국민의 약 10%가 지하경제와 관련하여 부유층으로 부상
  -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은행에 예치한 외화액이 수백억 불 규모로 추정

#### 4. 진입장벽 피해사례

- 미국 USTR은 수입허가 관련 일부 수입규제는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합당한 조치이나 그 외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로 이들 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평가
  - 알코올 제품은 수입자가 생산 또는 유통, 저장 및 수입허가까지를 받게 되어 있음. 이로써 수입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생산 또는 유통, 저장은 유통업자에게만 적용되면 되는 사항임)
  - 보드카와 데킬라 수입자는 ‘백주’ 라이선스도 취득해야 하는데 경제개발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데 최고 2개월이 소요되며, 라이선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추가로 2개월이 소요됨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같은 절차는 국내 유통업자에게는 요구되지 않으며, 특히 보드카 수입을 겨냥한 것임
  - 소비세는 주류 및 담배 등 사치품에 적용되는데 15도 이하의 주류는 리터당 2.20루블인데 반해 15도가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에틸 알코올함량 1리터당 112루블을 내야 함

## 5. 진입장벽별 파급효과

- 제품마다 다양한 취득 인증이 존재하여, 취득에 대한 시간 소요 및 업무 진행의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신속한 수출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증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을 경우 서류상의 작은 문제로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별 필요 인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숙지해야 함. 특히 인증 기간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리기 것을 감안해야 함
  - 품질증명서 등 필요한 인증은 현지 수입바이어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 및 절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바이어가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통관 지연 및 불합리한 통관 순서
  - 현행 관세법규에는 서류접수로부터 3일 내에 통관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지연 사유로는 세관장의 교체, 기타 행정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나,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까지 통관을 지연되기도 하며,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세관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
  - 또한, 통관 시 도착 순서가 아닌, 현지 통관사의 능력에 따라 통관순서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지 진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존재
  - 러시아는 새해 연휴가 가장 큰 명절로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는 업무가 마비되고, 이를 전후로 세관규정이 변경되는 등 운송 및 통관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 또한 극동지역의 경우 겨울에는 추위로 인하여 하역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가능한 12월 중순 이전에 충분한 물량을 수출하고, 수입자 등 파트너를 통하여 현지 통관사정 등을 파악하고 협의해야 함
- 러시아 시장진입비용이 시장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 수출업체의 러시아 바이어와 상담 시 매장 입점비, 홍보비 등의 비용부담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초기 입점비용 또는 홍보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후 관리비용을 수입자 또는 도소매 공급자가 부담하는 등의 조정 필요



○ 러시아의 수입금지조치

- 러시아 정부가 2006/2007년 사이 1년 동안 각국으로부터 식품 수입시 금지조치 등 규제를 가한 건수는 모두 20회이며, 해당국은 30여 개 국가로 나타남
- 러시아는 1년동안 육류, 가금류, 쌀, 어류, 와인, 미네랄워터, 과일, 가축 등에 대해 미국, EU, 폴란드, 독일, 일본, 한국 등 30여 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함. 이 중 육류와 관련, 러시아는 지난해 말 검역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했고, 2007년 2월에는 폴란드 쇠고기, 4월에는 살모넬라균 문제로 덴마크 돼지고기를 각각 수입금지함. 또 5월에는 독일, 아르헨티나의 수입쇠고기 수입금지. 지난해 중국산 쌀이 수입금지된 데 이어 금년 들어 인도산 쌀 또한 수입금지. 특히 당시 쌀은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린그라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극동러시아에서 쌀 가격이 수배 폭등하기도 함. 베트남, 일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한국, 중국, 칠레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했으며, 그루지아의 미네랄워터, 인도산 참깨도 검역문제로 수입을 금지시킴
- 특히, 러시아는 2005년 11월 폴란드산 육류의 위생 안전기준미달을 이유로 폴란드산 육류의 수입을 금지했고, 폴란드는 러시아가 과거 소련 위성국들의 민주화와 탈소련화를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이유로 육류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 넘게 마찰을 빚어옴

6 향후전망

- 러시아는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각종 수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투명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함
  -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 : 2001년 1월부터 기존의 0~30%까지의 7단계 관세율을 4단계(5%, 10%, 15%, 20%)로 단순화 및 하향조정하고, 2004년부터 관세절차를 간소하게 바꾸어 세관검사시간을 3일로 줄임
  - 러시아의 WTO 가입이 확정되면, 경쟁력 있는 대다수의 품목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겪게 되어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농산물시장 접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농업보조금 문제임





- 러시아 정부는 2007년 WTO 가입협상 시 연간 농업보조금 92억 달러 지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음
-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에 크게 반대하는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감축해야 함
- 러시아의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도 중요한 협상 이슈임
  - 러시아 정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며 그 이후는 공급업자들과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미국산 육류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국제위생기준 뿐만 아니라 러시아 위생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러시아 측이 미국과 합의한 절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할 방침임
  - 러시아 정부는 일부 동물용 사료시장과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견과류에 대해서는 시장을 완전개방할 예정임



[참고]

1 주요 품목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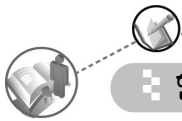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 관세율 조회 : 러시아 관세위원회 홈페이지([www.customs.ru](http://www.customs.ru))

- 러시아어로만 지원

HS Code	상품명	관세율
0201	쇠고기(신선, 냉장)	15%, 단 1kg 당 0.2유로 이상
	-기타	40%, 단 1kg 당 0.4유로 이상
0202	쇠고기(냉동)	15%, 단 1kg 당 0.15유로 이상
	-기타	40%, 단 1kg 당 0.4유로 이상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15%, 단 1kg 당 0.25유로 이상
	돼지고기(냉동)	15%, 단 1kg 당 0.2유로 이상
	-기타	60%, 단 1kg 당 1유로 이상
0206	소, 돼지 등 내장	15%, 단 1kg 당 0.15유로 이상
0207	가금류 육류 및 내장	25%, 단 1kg 당 0.2유로 이상
	-기타	60%, 단 1kg 당 0.48유로 이상
0209	돼지, 닭고기 지방	15%, 단 1kg 당 0.15유로 이상
0210	염장, 건조, 훈제 등 처리한 육류	15%, 단 1kg 당 0.4유로 이상
0301-0307	수산물	10%
0401-0410	우유 및 유제품	15%
0601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	5%
0602-0604	식물	15%
0701-0714	채소	15%
0801-0803	견과류	5%
0804	열대과일	5-10%
0805-0807	감귤, 포도, 메론	5%
	사과	
	-사과주용 9월16일-12월15일	1kg 당 0.2유로
	-기타 1월1일-7월31일	1kg 당 0.1유로
	-기타 8월1일-12월31일	1kg 당 0.2유로
	배	10%
0809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5%
0810	기타 과일	10%
0811	가공한 과일 및 견과류	10%

HS Code	상품명	관세율
0901	커피 - 볶지 않은 것 - 볶은 것	0% 10%, 단 1kg당 0.2유로 이상
0902	차	20%
0904-0910	마태, 향신료	5%
1001-1005	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5%
1006	쌀	1kg당 0.07유로 이상
1007-1008	수수, 메밀	5%
1101-1107	곡물가루	10%
1108	녹말	20%, 단 1kg당 0.06유로 이상
1201	대두	0%
1202-1214	채유용 종자	5%
1301-1302	식물성엑스	5%
1401-1404	기타 식물성 생산품	15%
1501-1518	동식물성 기름	15%
1601-1602	소시지 및 기타 유사품목	20%
1603-1604	육어류 죽,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	15%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 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0%
1901-1905	곡물조제품 및 빵류	15%
2001-2009	채소, 과실의 조제품	15%
2101-2106	기타 조제식료품	15%
2201-2202	물	15%, 단 1L당 0.07유로
2203	맥주	1L당 0.6유로
2204-2206	와인, 베르뭇, 기타 발효주	20%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용량 80% 이상) 및 변성알코올	100%, 단 1L당 2유로 이상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용량 80% 미만),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1L당 2유로
2209	식초	15%
2301-2309	조제사료	5%, 20%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5%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권련	30%, 단 1000개당 3유로 이상
2403	기타 제조담배	20%

※ 세부항목별 자세한 관세율은 세부 HS Code 별로 확인요망



## 2 식품수입동향

### 러시아 주요 농림축산물 수입현황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품 목	2006년		2007년		2007년 1-6월		2008년 1-6월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	20,337	—	26,143		12,123	—	15,516
육류	1,310	3,019	1,418	3,433	637	1,555	712	1,909
가금류육	1,274	921	1,287	1,052	535	419	585	558
어류	686	995	870	1,412	394	620	409	705
우유, 연유	8	17	13	54	2	6	14	45
우유조제품	111	197	75	173	49	92	48.	140
감귤류	1,187	698	1,260	843	652	428	677	477
커피	55	120	65	171	34	84	34	110
차류	173	354	182	432	91	207	92	252
곡물류	—	374	—	299	—	165	—	285
밀	1,397	156	465	73	268	38	125	42
보리	188	28	273	70	184	43	85	33
옥수수	296	68	94	65	75	48	201	119
식용유	100	92	132	133	47	43	66	110
육가공식품	27	64	32	97	14	41	16	58
설탕-원료	2,633	1,065	3,410	1,107	1,995	631	1,080	422
기타 백설탕	111	53	117	54	59	29	29	13
카카오 열매	69	124	67	141	27	54	26	60
카카오 함유 제품	111	297	134	438	55	155	54	190
알코올, 무알코올 음료	—	1,504	—	2,247	—	947	—	1,137
시가, 담배	—	124	—	105	—	42	—	69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